

「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4. . .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 등 일부를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4조제2호 중 “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”를 “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및 청년세대가 포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”로 한다.
-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4.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「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 등 일부를 수정한다.

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”를 “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및 청년세대가 포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4.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제4조(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)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.·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) - ----- ----- ----- 1. (원안과 같음) 2. <u>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및 청년세대가 포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</u> ----- ----- 3.·4. (원안과 같음) 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두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<u><신설></u>	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<u>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</u> 2. <u>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</u> 3. <u>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</u> 4. <u>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</u> 5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제7조 ~ 제9조 (생략)</u>	<u>제9조 ~ 제11조 (원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</u>

구미시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구미시의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
2. “청년친화도시”란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관련 사업을 발굴·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년친화도시 구성 원칙)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2.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및 청년세대가 포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
3. 교육·고용·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
4.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 조성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.

1.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
2.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
3.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
4.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
5.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4.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조사 등)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(이하 “조사·연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0조(지원)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

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홍보 및 교육)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